

## 브이 퇴직연금라이프싸이클 40 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

효력발생일: 2025년 3월 28일

### 신탁계약서 변경

1. 기재 정정 사유:
  - 1)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
  - 2) 펀드명 변경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1조(목적)	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<u>파인만자산운용(주)</u> 와 신탁업자인 <u>(주)하나은행</u>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<u>브이자산운용(주)</u> 와 신탁업자인 <u>(주)하나은행</u>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 칭 등)	펀드명 변경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 <u>파인만</u> <u>퇴직연금라이프싸이클 40 증권자투자</u> <u>신탁 1호(채권혼합)</u> ”로 한다.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<u>파인만</u> 연금국공채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 3. <u>파인만</u> 코리아국가대표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	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 <u>브이</u> <u>퇴직연금라이프싸이클 40 증권자투자</u> <u>신탁 1호(채권혼합)</u> ”로 한다.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2. <u>브이</u> 연금국공채증권 모투자신탁(채권) 3. <u>브이</u> 코리아국가대표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
	부 칙	<u>(신설)</u>	(시행일) 이 변경된 신탁계약은 2025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